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8. 3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 8. 31.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6.09.14)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8.4 법률 제7669호)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중 새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 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규정(안 제8조)
 마포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주요 집행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함.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8.4 법률 제7669호)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 중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등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과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구청장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와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도록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음.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 관련 규정 등의 보완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관리 및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개정으로 사료됨.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조항을 보면, 안 제6조에서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로, 안 제8조 중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안 제6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순수 자원봉사 인원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657명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보면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사항등 범위 확대로 인하여 시민단체화 되는등 순수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정일 위원) : 제18조 실비지급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활동사항에 대한 물품등을 지급함.
- 질의요지(강성국 위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9. 14 강성국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별첨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9. 14.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로 함.(안 제6조)
- 나.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중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중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기안	수정안
제6조(자원봉사센터)-----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마포구자원봉사센터는----- 1. ~ 6.(생략)	제6조(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자원봉사센터는----- 1. ~ 6.(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5. 8.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서울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중 새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규정(안 제8조)

마포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주요 집행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

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7669호)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 (3) 자원봉사센터설치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703호)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6.07.27~ 08.16, 20일간)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06.8.28)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포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마포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